

2009. 12. 18(금) : 10:00~

제163회 거창군의회 (2차 정례회)

거창군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2
2.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
3.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
4. 거창군 헌혈장려 조례안 10
5.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3

[거창군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12. 7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2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15.
- 마. 의안번호 : 제2009-57호

2. 제안이유

아동·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이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,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아동·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등 아동·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아동·여성폭력 예방·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아동·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

축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).

나. 아동·여성폭력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‘거창군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’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)

다. 아동·여성폭력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 (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).

4.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성폭력·가정폭력 등 아동·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효과 제고 및 피해자 지원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한 책무와 그 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,
 -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아동·여성보호지역연대

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,

- 안 제14조는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.

- 이 조례안의 제정은 최근 아동·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 아동·여성 대상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·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,

“2009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”에서 아동·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12. 7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2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15.
- 마. 의안번호 : 제2009-58호

2. 개정이유

부서의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부서의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(안 제3조, 제10조).
 - 분장사무 부서변경 : 기획감사실장 → 행정과장
 - 행정전산·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
 - 부서 분장사무의 명확화
 - 재 무 과 : 부서의 분장사무 수정·보완

- 민원봉사과 : 토지관련 민원에 관한사항 → 새주소
사업에 관한 사항
- 1010추진단 : 승강기산업 클러스터조성 → 승강기산
업밸리 조성 및 지원
- 보 건 소 : 가족계획 → 출산장려

나.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
(안 제8조, 별표).

○ 위치변경

- 보건지소 : 웅양면 보건지소 등 2곳
- 보건진료소 : 거기 보건진료소 등 6곳

○ 명칭변경

- 보건진료소 : 구송 보건진료소 → 봉산 보건진료소

4.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분장사무의 부서변경과 부서 분장사무
의 명확화를 위하고,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명칭
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
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12. 7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2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15.
- 마. 의안번호 : 제2009-59호

2. 개정이유

효율적이고 투명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 전달체계 개선 계획(사회장애인복지과 - 25343호(2009. 11. 04))에 따라 업무조정으로 본청과 읍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업무조정으로 본청 ⇔ 읍 정원조정

○ 본 청

- 일반직 6급 이하 계 : 212명 → 213명(증 1명)

○ 거창읍

- 일반직 6급 이하 계 : 34명 → 33명(감 1명)

4.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업무조정으로 본청과 읍사무소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거 창 군 헌 혈 장 려 조 례 안]

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. 12. 1.
- 나. 발 의 자 : 임종귀 의원 외 1명
- 다. 회부일자 : 2009. 12. 8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15.
- 마. 의안번호 : 제2009-56호

2. 제안이유

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“헌혈권장활동”과 “헌혈장려”, “헌혈자원봉사활동”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2조).
-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도마다 헌혈장려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 4조).

-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- 헌혈권장활동 및 헌혈 장려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엄수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8조).

4.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따라 국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거창군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에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4조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6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- 안 제8조에서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정하였음.

- 최근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등 혈액수급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증가되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〔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 〕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8. 03. 28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8. 03. 31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15
- 다. 의안번호 : 제2008-11호

2. 제정이유

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유 재산 관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 -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
- 나. 세입 항목을 규정함(안 제2조).
 - 일반회계 전입금, 공유재산의 매각대금, 사용료, 대부료, 변상금 등

다. 세출 항목을 규정함(안 제3조).

○ 집중재산의 취득, 공공청사 및 부지의 취득, 토지합병·분할 수수료 등
라.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함(안 제4조).

마. 예비비를 규정함(안 제5조).

○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
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함

4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,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안건으로서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서 세입은 “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, 공유재산의 매각대금·사용료·대부료·연체료 및 변상금, 국도비보조금 등” 이며,

- 안 제3조에서 세출은 “활용가치가 있는 집중재산의 취득,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등” 으로 규정되어 있고,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

- 안 제5조에서 “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” 라고 강제 규정을 두었는데

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” 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두지 않고 강제규정을 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- 그리고 「지방재정법」에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 세입·세출이 있을 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우리 군의 국·공유재산의 세입 규모를 보면,
 - 2006년도에 대부료, 변상금, 매각 등 세입이 431,406천원이며, 2007년도에 대부료, 변상금, 매각 등 세입이 281,841천원인데,
 - 공유재산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읍사무소 신축, 보건지소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4,974,000천원 이고,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공유재산관리에 소요 되는 세출예산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, 청사 천정 교체 작업 등에 2,251,542천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음.

- 이러한 것을 볼 때 공유재산의 대부료, 매각대금 등 자체 수입원이 빈약하여 세출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고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임.
 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이 있을 때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세입규모를 볼 때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원이 빈약하여 회계가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부실화 될 우려가 있고, 또한 군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
 -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빈약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없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어느 정도의 전입금액과 몇 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
- 또한 전국 도·시·군·구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·군이 4개 시·군(경기도 김포시, 남양주시, 안성시, 강원도 평창군) 뿐 인데, 우리 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

가. 발 의 자 : 총무위원회

나. 수정내용 : 붙임과 같음

- 현행 8개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특별회계와
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
13개조로 확대하여 규정 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9. 소수의견요지 : 생략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명 :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 례안	제명 :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제1조(목적) (생략)	제1조(목적) (제정안과 같음)
<신설>	제2조(자금의 운용 및 관리) 거창군 공유 재산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 하고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입 하여 토지의 고부가가치로 수익증대 2.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하여 분할 및 합병 3.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산화 4.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
제2조(세입) 거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 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 1. ~ 2. (생략) 3.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입에 따른 매각대금·사용료·대부료· 연체료·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거창군 귀속분 4. ~ 6. (생략)	제3조(세입) 특별회계----- ----- -----. 1. ~ 2. (제정안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--- 4. ~ 6. (제정안과 같음)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 1.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2. ~ 5. (생략)	제4조(세출)----- -----. 1. ----- 일반재산 ----- 2. ~ 5. (제정안과 같음)
<신설>	제5조(회계관계공무원 지정) 이 특별회 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 장을 징수관 및 경리관으로, 재산관 리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 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제6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를 준용한다.
<신 설>	제7조(금고의 지정)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.
제4조(전출금지) 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.	제8조(자금의 전용금지)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. 다만, 세입에 예상 외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.
제5조(예비비) (생 략)	제9조(예비비) (제정안과 같음)
제6조(예산의 편성 등)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	제10조(예산의 편성 등) ----- 따른 ----- 따른다.
<신 설>	제11조(예산의 집행)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사전 군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조(회계관리)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	제12조(회계관리) ----- ----- 갖춰 두고 ----- 증명서류----- -----.
제8조(시행규칙) (생 략)	제13조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